

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나50946 판결 [계약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천

담당변호사 장승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대, 김경덕

변론 종결 2020. 5. 8.

판결 선고 2020. 6. 5.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7가단33004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1)항, 제3의 다. (1)항과 제11면의 2, ⑤ 부분을 각 삭제하고, ② 제12면 5행 이하를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여기에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4 내지 7, 29, 30,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A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토지매입이 늦어지자 2016. 11. 3.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을 45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G 토지의 매매계약체결 완료 시기도 2016. 11. 1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 당시 원고가 G와의 매매계약체결을 2016. 11. 10.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자동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조항을 추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11. 10.까지 G, F, W, S, R와의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2016. 11. 10. 이후에도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5. 17.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7. 5. 26.까지 G와의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7. 5.

30.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7. 6. 5.까지 위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기간을 도과하여 2017. 6. 8.에야 G와의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였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 8명과 교섭하여 피고로 하여금 목표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체결 완료 시점인 2016. 11. 10.보다 200일 이상 지연된 2017. 6. 8.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전체 매매대금 역시 52억 5,100만 원으로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45억 5,000만원에 비하여 약 15% 가량 증액되었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체결 완료시기 및 전체 매매대금이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 및 1, 2차 변경계약에서 정하였던 것과 상당 부분 달라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수액의 감액비율은 위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보수액 250,000,000원에서 15%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보수금액 250,000,000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33,750,000원(= 250,000,000원 × 0.85 × 1.1)에서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53,750,000원(= 233,75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보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한혜진, 판사 강현준